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에 노인에게 방문 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 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 ② 신청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 이거나 의료 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월 이용료]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 요양 1등급    | 요양 2등급    | 요양 3등급    | 요양 4등급    | 요양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 재가급여  |
|----------------------------------------------------------------|-------|
| 일반                                                             | 1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면제 0% |
| 40%감경자<br>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25초과50%이하인자)                           | 9%    |
| 60%감경자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25%이하인자)<br>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6%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 등급     | '26년 추가 | '26년 본인부담 |
|-------------|--------|---------|-----------|
| 3시간 미만      | 1등급    | 33,460  | 5,019     |
|             | 2등급    | 30,980  | 4,647     |
|             | 3등급    | 28,590  | 4,288     |
|             | 4등급    | 27,300  | 4,095     |
|             | 5등급    | 25,990  | 3,898     |
|             | 인지지원등급 | 25,990  | 3,898     |
| 3시간 이상      | 1등급    | 41,820  | 6,273     |
|             | 2등급    | 38,720  | 5,808     |
|             | 3등급    | 35,740  | 5,361     |
|             | 4등급    | 34,120  | 5,118     |
|             | 5등급    | 32,490  | 4,873     |
|             | 인지지원등급 | 32,490  | 4,873     |
| 6시간 이상      | 1등급    | 56,060  | 8,409     |
|             | 2등급    | 51,930  | 7,789     |
|             | 3등급    | 47,940  | 7,191     |
|             | 4등급    | 46,300  | 6,945     |
|             | 5등급    | 44,650  | 6,697     |
|             | 인지지원등급 | 44,650  | 6,697     |
| 8시간 이상      | 1등급    | 69,730  | 10,459    |
|             | 2등급    | 64,590  | 9,688     |
|             | 3등급    | 59,640  | 8,946     |
|             | 4등급    | 58,010  | 8,701     |
|             | 5등급    | 56,360  | 8,454     |
|             | 인지지원등급 | 56,360  | 8,454     |
| 10시간 이상     | 1등급    | 76,820  | 11,523    |
|             | 2등급    | 71,160  | 10,674    |
|             | 3등급    | 65,750  | 9,862     |
|             | 4등급    | 64,090  | 9,613     |
|             | 5등급    | 62,460  | 9,369     |
|             | 인지지원등급 | 56,360  | 8,454     |
| 13시간 이상     | 1등급    | 82,370  | 12,355    |
|             | 2등급    | 76,310  | 11,446    |
|             | 3등급    | 70,500  | 10,575    |
|             | 4등급    | 68,860  | 10,329    |
|             | 5등급    | 67,240  | 10,086    |
|             | 인지지원등급 | 56,360  | 8,454     |
| 가족휴가 12시간미만 | 1등급    | 37,030  | 5,554     |
|             | 2등급    | 34,290  | 5,143     |
|             | 3등급    | 31,680  | 4,752     |
|             | 4등급    | 30,840  | 4,626     |
|             | 5등급    | 30,000  | 4,500     |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4,500     |
| 가족휴가 12시간이상 | 1등급    | 74,060  | 11,109    |
|             | 2등급    | 68,580  | 10,287    |
|             | 3등급    | 63,350  | 9,502     |
|             | 4등급    | 61,680  | 9,252     |
|             | 5등급    | 60,000  | 9,000     |
|             | 인지지원등급 | 60,000  | 9,000     |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7. 11조 1항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초(1~5일)에 고지하여야 한다.
8.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9.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월이용료외 그밖의 비용부담액]

| 구분    |                | 금액(원)     | 내역                       |
|-------|----------------|-----------|--------------------------|
|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          | 1식 3,500원 | 1식 (점심,저녁) 식사비 각 3,500원, |
|       | 간식비            | 1일 1,000원 | 간식 2회 기준                 |
|       | 이·미용           | 무료        | 외부 자원봉사                  |
|       | 기초수급권자         | 0%        |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료       |
|       | 병원비급여 약 값, 기저귀 | 실비        | 본인부담                     |

1.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 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2)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3)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6)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